



# 변액보험 예금자보호 대상 편입에 따른 고려사항

조재린 연구위원 · 이경아 연구원

## 요약

■ 최근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변액보험(=변액종신+변액연금)이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신규 편입됨. 그러나 변액보험 관련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 대상의 불명확성과 이로 인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상의 어려움, 그리고 예금보험료 산출식의 불확실성 등 문제점을 갖고 있음. 따라서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보장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조치, 그리고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의 특성을 고려한 예금보험료 산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예금자보호법 개정(2015년 12월)으로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이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신규 편입됨.<sup>1)</sup>

- 변액보험은 그 동안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신규 편입됨.
- 이에 따라 변액보험도 일반 보험금과 마찬가지로 보험금대지급, 계약이전의 예금자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예금자보호법에서 정의한 예금자보호 대상과 예금보험공사의 보도자료에서 규정한 예금자보호 대상이 서로 상이함.

- 예금자보호법에서는 예금자보호 대상을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으로 규정하고 있음(예금자보호법 제2조 2항 다호).
- 한편 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에서는 예금자보호 대상을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은 변액보험계약에서 약관에 따라 실적에 관계없이 최저한도로 보장

1) 변액보험 최소보험금에 대한 예금자보호법개정안은 2012년 10월 정부가 발의한 후 2015. 11. 3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5. 12. 22(화) 공포됨. 시행은 6개월 이후부터이며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추후 확정될 것으로 보임.

하는 금액으로서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반보험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예금자 보호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2015. 12. 2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

- 예금자보호 대상을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지불한 “보증수수료”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저보장보험금”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는 것임.

■ 예금자보호 대상에 대한 상이한 규정은 상이한 해석을 초래해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음.

-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은 계약자가 최소보험금을 보장받는 대가로 납부한 최저보증수수료 혹은 보험회사가 최저보증을 위해 적립한 보증준비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최저보증수수료 혹은 보증준비금으로 해석될 경우, 보험회사 파산 시 보험계약자가 최저보증수수료 혹은 보증준비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변액보험 예금자보호 대상을 최저보증보험금이라고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음.

- 최저보증보험금이란 예금자보호 대상 금액이 영업정지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건(만기 또는 사망 등)이 발생한 계약 중 적립금이 최소보험금보다 적을 경우 최소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되어 지급되는 금액임.
- 보증준비금은 최저보장보험금 지급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보험회사가 적립한 금액으로 계약자 몫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

■ 또한 보험계약자에게 예금보장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이 존재함.

-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에 대해서만 보장함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변액보험 전체가 예금자보호 대상인 것으로 오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변액보험 예금보험료 산출과정에서 일반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음.

- 일반 보험계약은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에 대해서 예금자보호가 이루어지므로 예금보험료는 아래의 산출식에 의해 결정됨.
  - 전통적인 예금보험료 산출식:  $\text{예금보험료} = 15/10,000 \times (\text{책임준비금} + \text{수입보험료}) / 2$
- 반면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금 성격의 최저보장보험금에 대해서만 예금자보호 대상임.
  - 변액보험 해지 시 최저보증수수료 및 보증준비금을 환급할 필요가 없음.
  - 일반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미경과보험료+보험료적립금)은 아직 보장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자 몫이라 할 수 있음.
  - 반면 변액보험의 최저보장수수료는 이미 보험회사가 최소보험금 지급보장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이므로 보험회사의 몫임.
- 따라서 변액보험의 특성을 반영하여 변액보험 예금보험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음.

- 변액보험관련 예금자보호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변액보험 관련 예금자보호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조치, 그리고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의 특성을 고려한 예금보험료 산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kiri](#)